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42
----------	-------

발의연월일 : 2017. 11. 27.

발의자 : 이석현 · 신창현 · 김민기  
김해영 · 안규백 · 신경민  
김병기 · 어기구 · 안호영  
서영교 · 금태섭 · 조정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상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9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로,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49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p> <p>① (생 략)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 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u>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u> <u>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u> <u>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 2. (생 략) ③ · ④ (생 략)</p>	<p>법률 제149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p> <p>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u> ----- ---<u>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u>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p>